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행정안전부 소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 전면 개정되고 (법률 제19555호, 2023. 7. 18. 공포, 2025. 7. 19. 시행), 국제입양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553호, 2023. 7. 18. 공포, 2025. 7. 19.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국내외 입양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위기임산부 지원 및 그 자녀인 아동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816호, 2023. 10. 31. 공포, 2024. 7. 19. 시행)됨에 따라 보호출산제 신규 도입·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보건복지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 31. ~ 2.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6호 중 “완화의료”를 “호스피스·완화의료”로 하고, 같은 항 제40호의3 중 “연명치료중단 등의 제도화와”를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운영에”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844”을 “847”으로 하고, 일반직 계 “835”을 “838”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805”를 “808”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보건의료정책실) ① · ② (생 략)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1. ~ 35. (생 략) 36. <u>완화의료(緩和醫療)</u> 의 활성화 및 암생존자 재활 지원 37. ~ 40의2. (생 략) 40의3. <u>연명치료중단 등의 제도</u> <u>화와</u> 관련된 사항 40의4. ~ 45. (생 략)	제14조(보건의료정책실)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35. (현행과 같음) 36. <u>호스피스·완화의료</u> ----- ----- 37. ~ 40의2. (현행과 같음) 40의3. <u>연명의료결정제도의 운</u> <u>영에</u> ----- 40의4. ~ 45. (현행과 같음)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4]

보건복지부 공무원 정원표(제41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844</u>	<u>847</u>	+3
·	·	·	
·	·	·	
일반직 계	<u>835</u>	<u>838</u>	+3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805</u>	<u>808</u>	+3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70